



산학협력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9. 3. 19., 2019. 9. 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주요골자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세목 분리 및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 세목 통합
- 인건비 내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기준 신설
- 전임교원에게 정부지원 연구용역 과제 인건비 지급 시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1인당 지급 상한 비율(총 지급액의 70%) 명시
- 인건비 월기준액 상향조정 및 계상기준 변경<별표 1>
- 강사료, 번역료 단가 상향조정<별표 12>, <별표 13>
-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 서식 삭제

2. 공포 및 시행일: 2019. 10. 31.(목)

-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별표 1>의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붙임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전문 1부.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1부. 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수신자 전 기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본부장, 산학협력단 연건분원장,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장

대리 **현혜경**

팀장(대) **직무연수**

부장 **가남희**

본부장

전결 10/29

정정규

협조자

시행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25416 접수 농업생명과학대학-31249 (2019. 10. 30.)
(2019. 10. 30.)
우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화 02-880-2042 전송 02-885-4482 /gold0831@snu.ac.kr / 공개